

審 査 報 告 書

1995. 10.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년 9월 28일 속초시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10월 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 10. 5) 상정, 의결

2. 提案説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
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 경정
-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예산의 재조정
- ‘95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재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나. 주요골자

- 예 산 액 : 86,808,490천원 (2회 추경 3,337,479 천원)
 - 일반회계 : 63,218,426천원 (2회 추경 2,988,509 천원)
 - 특별회계 : 23,590,064천원 (2회 추경 348,970 천원)
- ※ 공기업 16,385,179천원, 기타 7,204,885천원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의 要旨

- 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증가액

33억 3천 7백만원중 73%인 24억 3천 5백만원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중점 배분되었으며

- 나. 특히 지방세 수입예상액을 최대한 예산에 계상하여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한 점은 인정되나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에 대하여 앞으로는 절감예산, 불가피한 사업변경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예외로 하고 추경예산 편성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부시장 곽상욱)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외용치 군사시설이전 공사관련 사업비는 36억원이라 생각 되는데 2회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	○ 외용치 군사시설은 총 사업비 36억원에 이전하기로 22사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았으나 각서내용중 단서조항에 공사 추진중 예기치 못한 예산 증가요인에 대하여 시비보조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군대부에서 항시 시비보조를 주장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안 발생시 의원과 협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 사업비 36억원중에서 사용토록 하겠음.

5. 討論 要旨 :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報告 要旨 : 미설치

7. 修正案의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수정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불합리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함.

다. 수정주요골자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에

불합리하게 편성된 청초천 제방편입부지 보상비 2천 8백
4십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비에

과다하게 계상된 영랑동 주차장 보안등 시설 사업비는
1천 4백 4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 그밖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함.

8.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9.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10.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부. 끝.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 반 회 계
 - 가. 세 입 : 원안대로
 - 나. 세 출 : 원안대로
2. 특 별 회 계
 - 가. 세 입 : 원안대로
 - 나. 세 출
 -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합 계			124,705	28,400	28,400	124,705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관리비	관리비	124,705	28,400		96,305	. 불합리하게 편성된 청초천제방 편입부 지 보상비 Δ 28,400
1000	1100	1110					
'	예비비	예비비			28,400	28,400	
'	1400	1410					
		이	하	여	백		

2)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장	관	항		감 액	증 액		
합 계			290,861	14,400	14,400	290,861	
주차장 설치특 별회계	주차장	사업비	223,776	14,400		209,376	. 과다하게 계상된 영랑동주차장 보안 등 시설비 Δ 14,400
8000	8100	8120					
	예비비	예비비	67,085		14,400	81,485	
	400	410					
		이	하	여	백		

3)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